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 3

- | | |
|---|---------------|
| 3 | 1. 동향 |
| 5 | 2. 전망과 체크 포인트 |

II. 지역별 최저임금표준 / 9

III. 중국의 최저임금제도 / 17

부록

- | | |
|----|--------------------------------|
| 20 | 1.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표(2008년 4월1일 기준) |
| 26 | 2. 최저임금규정 |

요약

최근 중국의 최저임금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상해는 4월 1일부로 최저임금을 840위안에서 960위안으로 14.3% 인상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광둥성은 종전보다 평균 12.9% 오른 860위안~530위안을 적용하고 있다. 북경도 오는 7월 광둥성에 근접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급등은 치솟는 소비자물가, 높은 경제성장률, 막대한 무역수지흑자와 외환보유고 등 대내외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물가 상승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각 지방정부가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을 좇아 이동하는 노동자들의 특성상 지역별·시기별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므로 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될 것이다.

5월 1일부로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포함한 각종 노사 문제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법규정 준수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내륙지역의 경우 동부 연해에 비해 임금의 절대 액수는 여전히 적지만 상승률에 있어서는 연해지역을 추월하는 경우도 있다. 저임금 확보를 위해 내륙지역으로 진출 또는 이전하는 기업들은 중장기적 임금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들은 인력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임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향후 최저임금 추가인상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상황별로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I.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1. 동향

- 중국의 최저임금은 각 지역별 1급지 기준으로 지난 2002년만 해도 모두 500 위안대 이하에 머물렀으나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함
- 2008년 4월 1일 기준으로 900위안 이상 1개 지역(상해), 800위안대 5개 지역(천진, 강소, 절강, 광둥, 신장 1), 700위안대 5개 지역(북경, 요녕, 복건, 산둥, 저장), 600위안대 13개 지역, 500위안대 5개 지역(안휘, 강서, 호북, 광서, 영하), 400위안대 2개 지역(감숙, 청해)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절반 이상 지역이 집중됐던 300위안대는 2008년 4월 1일 현재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있음

중국 연도별/금액 범위별 최저임금표준 인상 추세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900元 이상	1						
800~899	5	3					
700~799	5	5	4				
600~699	13	10	7	5	4		
500~599	5	10	14	6	5	4	2
400~499	2	3	6	14	14	8	7
300~399				6	8	15	16
299元 미만						3	5

주 : 수치는 각 년도의 최저임금표준 금액 범위별 성·시의 갯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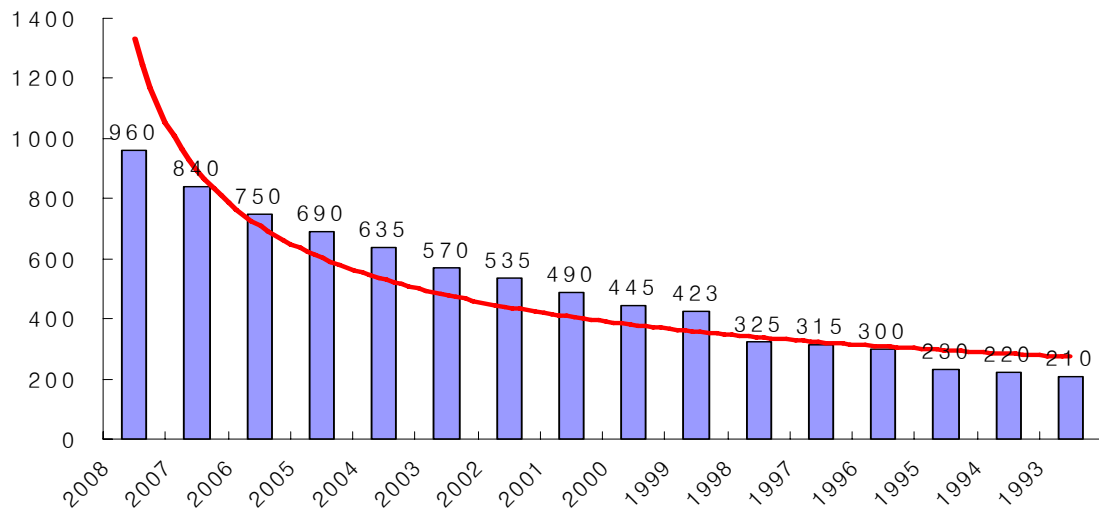
자료원 : 中國勞動諮詢網 자료 별도 정리

- 1) 신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표준을 2가지 형식으로 동시에 발표함. "3險 1金"(노동자 개인이 납부하는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3대 보험과 주택공적금을 지칭)을 포함할 경우는 800~520위안이며 미포함 시에는 670~400위안임.

- 지역별로는 상해의 경우, 2008년 4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840위안에서 960위안으로 14.3%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임

〈상해시 최저임금 인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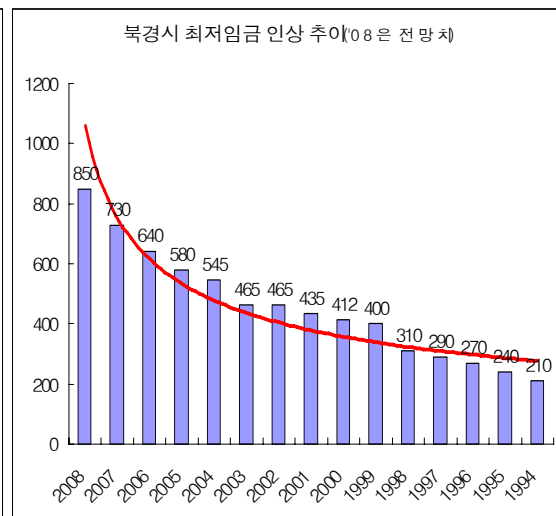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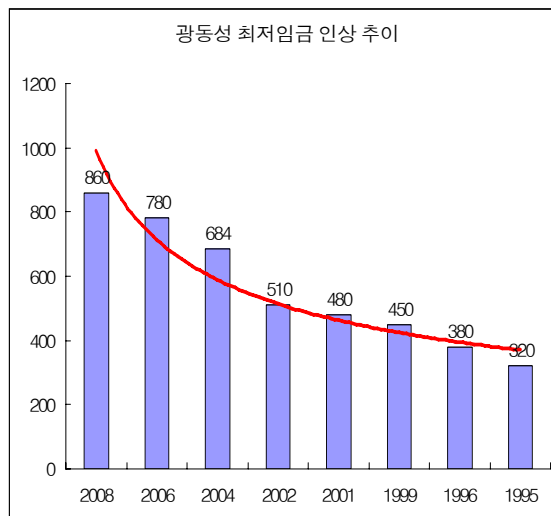
단위 : 위안/월



단위 : 위안/월

자료원 : 中國勞動咨詢網(이하 그래프 동일)

- 상해와 최저임금인상 경쟁국면을 보이고 있는 광동성도 4월 1일부로 종전(2006년)보다 평균 12.9% 인상돼 급지별로 860위안~530위안이 적용되고 있고 북경은 오는 7월 광동성과 근접한 수준의 인상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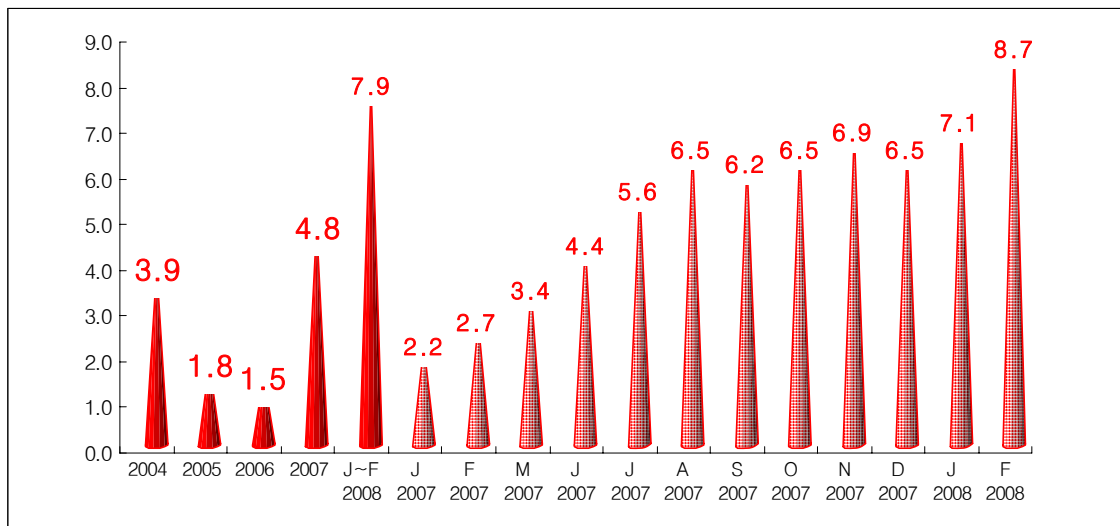


2. 전망과 체크 포인트

□ 대내외 환경요인이 임금상승 부추겨

- 최근 중국의 최저임금 급등세는 대내외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주요 요인은 인플레이션 경계선을 넘어 치솟는 소비자물가, 높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막대한 교역량에 따른 무역수지흑자 등임
- 가장 큰 요인은 물가 급등이며 이는 당분간 극적으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진출기업들은 향후 최저임금 추가 상승에 대비해야 함
 -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6년 1.5%에서 2007년 4.8%로 오른 가운데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 월별 상승률이 6%를 넘어섬
 - 정부의 물가단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들어서는 1월 7.1%, 2월 8.7%로 추가 상승해 10%에 육박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체크 포인트

최근 각 지역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10% 이상인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은 향후 당분간 年 10%선의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임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향후 임금인상 추세에 대해 어느 선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수준을 넘어설 경우 철수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한편 일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반응이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급등세는 신노동법 이행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잔업비 및 경제보상금 지급 부담,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임

- 기업들은 인력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검도 서둘러야 함

□ 올해도 잇따라 오를 듯

- 국제적인 경험상 최저임금표준은 평균임금의 40~60%선이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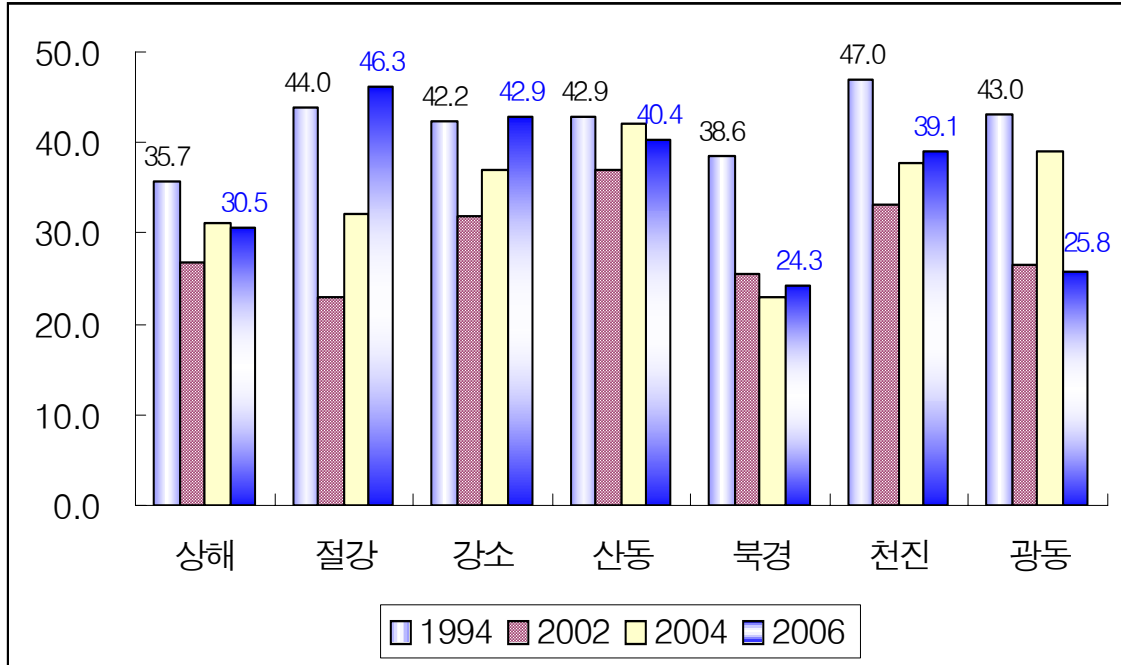
- 유럽 국가들은 대개 60%를 넘어서며 미국과 호주의 경우 비록 20~30%대이지만 강력한 사회구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평균임금은 지속 상승했으나 최저임금표준이 정체된 이유로 인해 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1994년 평균 40% 내외에서 2002년에는 30% 초반대로 떨어짐

- 2004년 최저임금규정 시행 후 회복추세이나 국제수준에는 미달

- 중국은 최저임금규정에서 각 지방정부에 대해 2년에 1회 최저임금 인상을 명문화 했고 전국총공회 등이 나서 국제수준(평균임금의 40~60%) 도달을 촉구하고 있음

중국 주요 지역별 월 평균임금 대비 월 최저임금 수준(%)



자료원 : 中國勞動咨詢網, 中國統計年鑑

- 또한 각 지방정부들이 부족한 노동력 유입을 위해 최근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실제로는 많은 지방에서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2)
- 특히 상해가 4월 1일부로 최저임금을 960위안으로 인상함으로써 최저임금 상위 지역 간 인상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전망

체크 포인트

올해는 5월 1일부 시행에 들어가는 “노동쟁의조정중재법”에 특히 주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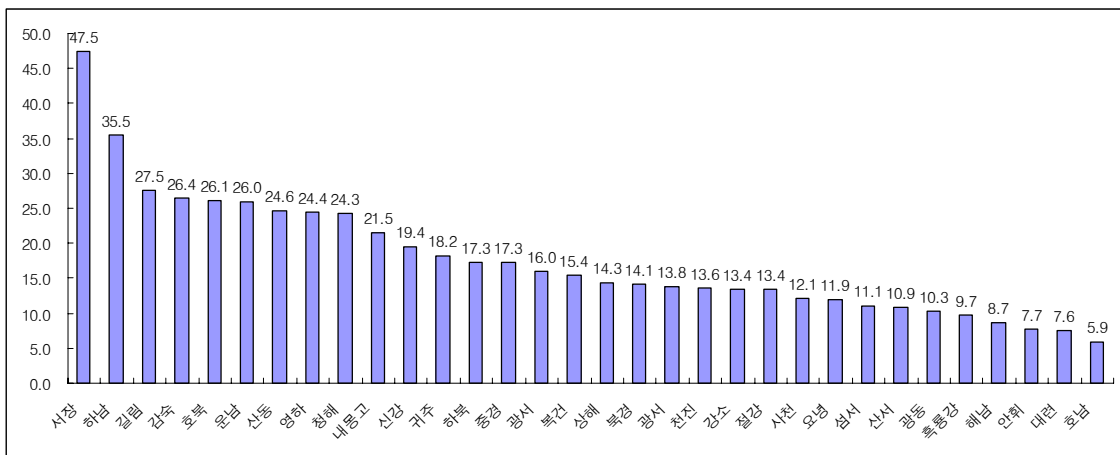
이 법은 노동쟁의 절차를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포함한 각종 노사문제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법규정 준수에 특히 유의해야 함

- 2) 북경이 오는 7월 10% 이상의 인상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으며 상해, 심천, 요녕, 길림, 강소, 절강, 안휘, 복건 등도 연내 10% 내외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 내륙지역 임금 급상승도 주목해야

- 내륙지역은 동부 연해에 비해 임금의 절대 액수는 여전히 적지만 상승률에 있어서는 연해지역을 추월하는 경우도 있음
- 저장자치구는 2008년 1월 무려 47.5%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였고 하남, 감숙, 영하자치구, 청해 등도 최근 20%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중국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 상승률(%)



주 : 수치는 가장 최근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 기준임

자료원 : 中國勞動諮詢網, 中國統計年鑑

체크 포인트

중국은 각 지역별로 부족한 노동력 유입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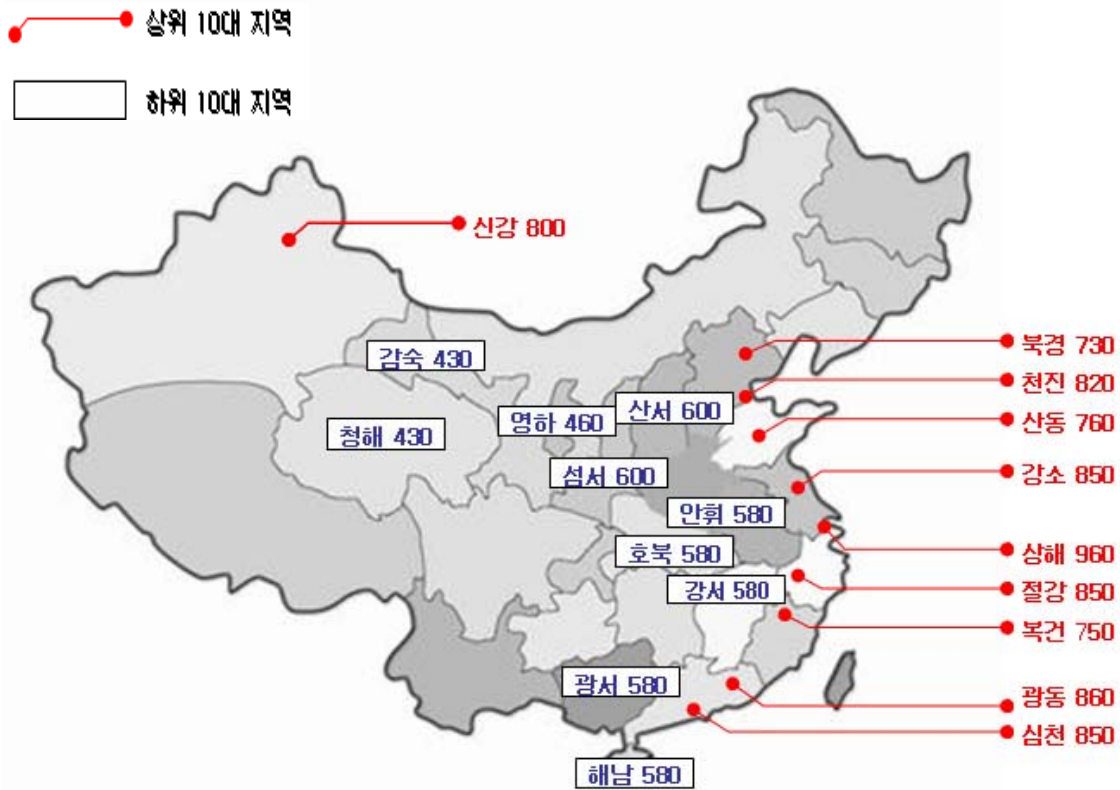
상해를 포함한 장강삼각주와 광주-심천의 주강삼각주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산둥성과 심지어 내륙지역도 가세하고 있음

이 같은 국면은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을 좇아 이동하는 노동자들을 부추겨 지역별·시기별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므로 기업들의 구인난은 당분간 가중될 것임.

- 이에 따라 연해지역의 고임금을 피해 내륙지역으로 진출(또는 이전)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내륙지역의 중장기적 임금상승 전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II. 지역별 최저임금표준 3)

중국 최저임금 상위 10대 지역과 하위 10대 지역



주 : 금액은 성·직할시·자치구의 1급지 기준(2008년 4월 1일 기준)

: 신강자치구의 월 최저임금표준은 "3險 1金" 포함 기준임("3險 1金" 미포함 시에도 중부 지역보다 최저임금표준이 높음)

자료원 : 中國勞動諮詢網 자료로 작성

- 중국 내 최저임금(지역별 1급지 기준) 상위 10대 지역은 상해, 광둥, 심천, 강소, 절강, 천진, 신강, 산둥, 복건, 북경 등임

- 북경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약 850위안으로 인상될 전망

- 하위 10대 지역은 감숙, 청해, 영하, 해남, 광서, 강서, 호북, 안휘, 섬서, 산서 등임

- 경제가 발전한 동부와 낙후된 중서부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3) 자세한 사항은 [부록 1]지역별 최저임금 현황표(2008년 4월 1일 기준) 참조

[광둥]

- 광둥성의 최저임금은 1급지 기준으로 제도 시행 당시인 1995년 320위안에 그쳤고 2002년(510위안)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2008년 4월 1일 현재 최저임금표준은 종전(2006)보다 평균 12.9% 인상된 860위안~530위안임
 - 1급지인 광주는 780위안에서 12.2% 인상된 860위안이며, 지난 3월까지 절대 금액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나 4월 1일부로 상해(960위안)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됨⁴⁾
 - 광주의 최저임금액은 중국에서 가장 낮은 감숙성 1급지(430위안)보다 2배나 많음
 - 5급지는 450위안에서 530위안으로 17.8% 인상돼 5개 급지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임
- 황화화(黃華華) 광둥성 성장은 최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광둥성은 향후 3년 연속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밝힘
- 심천은 광둥성 소재 도시(地級市)지만 경제특구 및 경제적 위상으로 인해 별도 최저임금표준을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10월 1일 이후 2008년 6월 30일 현재까지 850~750위안이 적용되고 있으나 2008년 7월 이후 광주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4) 그러나 상해의 경우, 최저임금액에서 전국 공통으로 제외되는 3개 표준 항목 외에도 사회보험료, 주택적립금, 식사수당, 출근수당, 주택수당이 추가로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4월 1일 이전에도 실제로는 상해의 최저임금표준이 중국 내 최고 수준이었음

광둥성 최저임금표준

종류	전일제 월 최저임금			비전일제 時給 (위안/時)	대상지
	2006.9.1	2008.4.1			
	月給	月給	時給		
1급지	780	860	4.94	8.3	廣州
2급지	690	770	4.43	7.4	珠海, 佛山, 東莞, 中山
3급지	600	670	3.85	6.5	汕頭, 惠州, 江門
4급지	500	580	3.33	5.6	韶關, 河源, 梅州, 汕尾, 陽江, 湛江, 茂名, 肇慶, 清遠, 潮州, 揭揚, 雲浮
5급지	450	530	3.05	5.1	4급지 일부 현금 시
심천	810	850	4.89	-	특구 내
	700	750	4.31	-	특구 외

주 : 전일제 월 최저임금의 時給은 “월급/21.75/8” 기준

자료원 : 광둥성 勞動保障廳

[산둥]

- 산둥성의 최저임금은 1급지 기준으로 제도 시행 당시인 1994년 170위안에 그쳤고 2002년(410위안)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최저임금표준은 2007년까지 5개 급지로 적용됐으나 2008년 1월 1일부로 3개 급지로 단순화되면서 상승세를 재촉하고 있음
 - 1급지 기준으로 610위안에서 760위안으로 24.6% 대폭 상승
 - 특히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최저임금액 상승률이 100%를 넘어서 이 지역에 밀집한 노동집약형 가공무역 중소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극심한 임금 상승세를 겪어왔음을 반영
- 산둥성은 최저임금에서 전국 공통으로 제외되는 3개 표준 항목 외에 추가 항목은 없지만 올해부터 시의 급지 수가 축소되었음에도 구(區)별로 서로 다른 급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이 지역 진출기업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산동성 최저임금표준

종류	전일제 월 최저임금			비전일제 時給 (위안/時)	대상지
	2006.10.1	2008.1.1			
	月給	月給	時給		
1급지	610	760	4.37	-	제남, 청도, 연태 등 (760~620)
2급지	540	620	3.56	-	태안, 臨沂 등 (620~500)
3급지	480	500	2.87	-	聊城, 荷澤 등(500)
4급지	430	-	-	-	-
5급지	392	-	-	-	-

주 : 비전일제 시간당 최저임금은 도시별로 5.4~7.5위안 수준
 자료원 : 산동성 인민정부

[요녕]

- 요녕성의 최저임금은 1급지 기준으로 제도 시행 당시인 1995년 210위안 이었으나 2004년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요녕성은 2004년 10월까지 360~230위안으로 중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 2008년 4월 현재 700~500위안 수준임
 - 심양은 2008년 1월 1일부로 3개 급지에서 2개 급지로 축소되면서 시내 9개 구와 개발구 2개에 700위안이 적용됨
 - 심양(2008.1.1 인상)을 제외한 다수의 도시들이 2007년 1월 1일부 최저임금표준을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 잇따른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음
- 대련의 경우 경제기술개발구와 보세구 등이 1급지(700)이며 北三市는 2급지(600)임

요녕성 최저임금표준

종류	전일제 월 최저임금			비전일제 時給 (위안/時)	대상지
	2006.10.1	2007.12.20			
	月給	月給	時給		
1급지	590	700	4.02	6.0	심양 9개區 · 경제기술개발구 ·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 대련개발구 등
2급지	480	580	3.33	4.8	撫順市(新撫區, 東洲區, 望花區, 順城區), 撫順縣, 營口, 葫芦島(市直, 連山, 龍港區) 등
3급지	420	500	2.87	3.5	新賓滿族自治縣, 淸原滿族自治縣, 阜新, 鐵嶺, 朝陽, 葫芦島 (2급지 이외 현금 시)

자료원 : 요녕성 인민정부

[상해 · 강소 · 절강]

- 1993년 중국에서 처음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상해는 2008년 현재까지 한 해도 빠지 않고 매년 최저임금표준을 인상해왔음
- 2008년 4월 1일 기준 최저임금표준이 840위안에서 960위안으로 14.3% 인상 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임

상해시 최저임금표준

종류	전일제 월 최저임금			비전일제 時給 (위안/時)	대상지
	2007.9.1	2008.4.1			
	月給	月給	時給		
1급지	840	960	5.12	8	시 전역

자료원 : 상해시 인민정부

- 특히 상해는 최저임금에서 전국 공통으로 제외되는 3개 표준 항목 외에 급식보조금, 출퇴근 교통보조금, 주택보조금도 기업이 별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1천 위안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강소성과 절강성은 인접한 성으로써 2003년 이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중임
- 상해가 경제 연관성이 매우 높은 특성상 2008년 4월 상해가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강소성과 절강성도 2008년 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하반기 900위안대로 인상될 가능성 있음

강소성 최저임금표준

종류	전일제 월 최저임금			비전일제 時給 (위안/時)	대상지
	2006.10.1	2007.12.20			
	月給	月給	時給		
1급지	750	850	4.89	7.2	지역별 차이
2급지	620	700	4.02	5.9	지역별 차이
3급지	520	590	3.39	5.0	지역별 차이

자료원 : 강소성 인민정부

절강성 최저임금표준

종류	전일제 월 최저임금			비전일제 時給 (위안/時)	대상지
	2006.9.1	2007.9.1			
	月給	月給	時給		
1급지	750	850	4.89	7.2	지역별 차이
2급지	670	750	4.31	6.4	지역별 차이
3급지	620	700	4.02	6.0	지역별 차이
4급지	540	620	3.56	5.3	지역별 차이

자료원 : 절강성 인민정부

[북경·천진]

- 북경도 상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매년 1회씩 최저임금표준을 지속 인상함
- 2008년 4월 1일 기준 최저임금(730)이 상해(960)의 76%에 불과하나 북경을 립찍을 앞두고 올 7월 약 850위안 선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북경시 최저임금표준

종류	전일제 월 최저임금			비전일제 時給 (위안/時)	대상지
	2006.7.1	2007.7.1			
	月給	月給	時給		
1급지	640	730	4.20	8.7	시 전역

자료원 : 북경시 인민정부

- 천진의 최저임금액은 제도시행 당시는 북경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북경을 소폭 상회하고 있음
- 천진도 1995년 이래 매년 1회씩 최저임금표준을 지속 인상함
 - 천진의 최저임금표준은 1995년 210위안에서 이후 총 14회에 걸쳐 820위안으로 인상돼 연평균 10.8% 오름

천진시 최저임금표준

종류	전일제 월 최저임금			비전일제 時給 (위안/時)	대상지
	2007.4.1	2008.4.1			
	月給	月給	時給		
1급지	740	820	4.71	7.8	시 전역
2급지	720	-	-	-	-

자료원 : 천진시 노동사회보장국

- 천진은 최저임금표준에서 제외되는 3대 항목과 함께 난방보조금도 최저임금 표준에서 추가 제외되어 실제 임금 수준이 매우 높음
- 2008년 4월부터 행정구역내 모든 도시, 농촌 지역에 대해 동일한 단일 급지를 적용함

III. 중국의 최저임금제도

1. 경과

- 중국은 1980년대 이전부터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을 모색해왔으나 법률적 장치로 정비돼 공식화된 것은 1993년 노동부의 「기업최저임금규정」 공포 이후임
- 1993년(도입기) : ‘기업최저임금규정’과 ‘임금지급규정’ 등이 나왔으며 상해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표준을 적용(당시 210위안)
- 1994년(확산기) : 《노동법》 제48조에 최저임금보장제도 시행 방침을 명시했으며 북경(당시 210위안), 산둥(170위안), 해남(280~180위안) 등이 잇따라 최저임금표준을 시행함
- 2004년(정착기) : 노동사회보장부가 ‘최저임금규정’을 공포, 시행(3월)하면서 1993년 이래의 ‘기업최저임금규정’을 폐지했고 11월 서장자치구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표준을 시행하면서 중국 전역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됨
- 2005년 이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본격 상승하기 시작함

중국 최저임금제도 경과

모색기 (1993년 이전)	도입기 (1993년)	확산기 (1994~2003년)	정착기 (2004년)
- 1949년 政協공동강령에 최저임금 규정 포함 - 1984년 ILO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26호) 비준	- 노동부 ‘기업최저임금규정’ 공포 - ‘임금지급규정’ 등 제도화 추진 - 상해, 첫 최저임금표준 적용	- 노동법에 최저임금보장제도 시행 방침 명시 - 북경, 산둥, 해남 등 최저임금표준 시행 후 전국적으로 확산	- 노동사회보장부 ‘최저임금규정’ 공포, 시행(3.1) - 서장자치구를 마지막으로 32개 쏰성·시·자치구 최저임금제 시행

2. 특징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보장성(기본생활 보장), 강제성(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효력), 거시경제조절기능(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취업 압력 완화) 등의 특징을 가짐
- 중국은 이 같은 일반적 특징 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음
 -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시기(1993~1994년)에 있어 세계 최초인 뉴질랜드(1894년)보다 1백년 가량 뒤졌으나 물가 급등, 경제 성장 등 요인으로 인해 최근 임금 상승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조정 빈도가 높음
 - 최저임금제도의 모델은 중앙정부가 원칙적 규정을 정하고 각 지방별로 차등 표준을 적용하는 혼합형임
 - * 최저임금제도의 모델은 국별로 전국 통일형(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업종형(독일, 스웨덴 등), 지방형(호주) 등으로 다양
 - 최저임금액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것도 중국의 특수성임
 - * 상해와 심천은 감숙성의 2배 내외 수준(각 지역 1급지 기준)
 - * 동일 지역 내에서도 급지(級地) 차이에 따른 임금액 격차가 큼

중국 최저임금제도 특징

일반적 특징 + 중국의 특수성	
- 보장성 : 노동자 기본생활 보장 - 강제성 : 법적 강제력 - 거시경제조절기능 : 물가변동 시 임금 보존 및 취업압력 완화 작용	- 임금 상승률 급등 : 최근 경제성장 및 물가급등 요인 작용 - 혼합형 제도 : 지방별로 차등 표준 적용 - 지역간 격차 극심 : 지역간 경제수준 격차 요인

3. 주요 내용

□ 개요

-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약정된 근로시간에 제공한 정상적 노동에 대해 회사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최저선(minimum)의 노동보수”를 의미
 - * 노동사회보장부 「최저임금규정」(2004.3.1 시행) 제3조
- 적용 대상은 국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사영기업 등 중국 내 소재한 모든 형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임
 - * 「최저임금규정」 제2조
- 각 지방정부는 최저임금표준 시행 후 여건 변화에 따라 2년마다 최소 1회 조정함
 - * 「최저임금규정」 제10조
- 최저임금표준 조정빈도가 종래(1993년 기업최저임금규정) ‘매년 1회 이내’에서 2004년 「최저임금규정」 시행 후 ‘2년마다 최소 1회’로 수정됨

□ 구성 범위

- 「최저임금규정」 제12조는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아래 3개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1. 잔업비 ;
 2. 야간교대조 수당, 고온 및 저온, 갭내 작업, 유독유해 등 특수작업환경과 조건에 따른 수당 ;
 3. 법률, 법규와 국가가 규정한 노동자 복리대우 등.

- ☞ 이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은 포함되나 잔업비, 특수작업수당, 법적 복리대우 5)는 제외되어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함을 명시한 것임

$$\boxed{\text{최저임금}} = \boxed{\text{기본급}} + \boxed{\text{상여금}} + \boxed{\text{수당 6)}} + \boxed{\text{보조금}}$$

- 종래 적용 기준인 「기업최저임금규정」(1993)은 최저임금 미포함 대상을 1) 잔업비 2)특수 수당 3)국가 법률, 법규와 정책에 규정된 노동자보험, 복리대우로 규정했으나 현행 「최저임금규정」은 제3)항을 “법률, 법규와 국가가 규정한 노동자 복리대우”로 수정함

- ☞ 제3)항의 경우 현행기준에 따르면, 복리대우만을 최저임금 미포함 대상으로 하며 노동자보험 7)은 최저임금표준에 포함됨을 의미함

□ 지급 조건

- 회사가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의 정상적인 노동의무 이행’ 8)이 전제되어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급연차휴가, 혼상례 휴가, 출산육아휴가, 피임수술휴가, 사회활동 참여 등의 기간은 정상적인 노동시간으로 간주함
- 견습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표준을 적용되며,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회사는 최저임금표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음

5) 「최저임금보장제도 실시에 관한 통지」(1994.10)에 따르면 ‘복리대우’란 회사가 급식보조, 주택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노동자의 비현금성 수입을 의미함

6) 최저임금에는 만근(滿勤)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할 수 있음. 주의할 점은 임금 600원의 경우 ‘기본급 550원+만근수당 50원’ 수준의 구성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만근수당의 비율을 과다 계상하면 문제발생 소지가 큼. 회사가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임

7) 노동자보험은 노동자 개인이 납부하는 양로보험금, 의료보험금, 실업보험금 및 주택공적금을 뜻함

8) 「최저임금보장제도 실시에 관한 통지」와 「최저임금규정」 제3조 참조

- 그러나 노동자의 결근, 질병 또는 비공무(非公務) 상해(傷害) 등 본인 귀책사유 발생 시 회사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9)

□ 처벌 조항

- 회사는 소재지의 최저임금표준이 발표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전 노동자에게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함
- 《노동계약법》 제85조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소재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에는 체불액의 50%~100%의 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0)

9) 노동자가 비공무 사유로 상해를 당한 경우 규정상으로는 회사가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공무 또는 비공무 사유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 시 회사와 노동자 간 분쟁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10) 노동계약법 도입에 앞서 '최저임금규정'은 체불액의 100~500%의 배상금 지급규정을 두었으나 노동계약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노동계약법 조항에 따름

[부록1]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표(2008년 4월 1일 기준)

성 시 자치구	시행 시기	최저임금 기준 및 전망(단위 : 위안/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6급지	7급지	8급지	9급지
북경 北京	2008.7.1 예상	800+ (10 ↑)	-	-	-	-	-	-	-	-
	2007.7.1	730 (14.1)	-	-	-	-	-	-	-	-
	2006.7.1	640 (10.4)	-	-	-	-	-	-	-	-
천진 天津	2008.4.1	820 (13.6 ↑)	-	-	-	-	-	-	-	-
	2007.4.1	740 (10.5)	720 (10.8)	-	-	-	-	-	-	-
	2006.4.1	670 (13.6)	650 (14.1)	-	-	-	-	-	-	-
하북 河北	2008.2.1	680 (17.3)	620 (14.9)	560 (16.7)	510 (15.9)	-	-	-	-	-
	2006.10.1	580 (11.6)	540 (14.9)	480 (14.3)	440 (-)	-	-	-	-	-
	2004.7.1	520 (36.9)	470 (56.7)	420 (75.0)	-	-	-	-	-	-
산서 山西	2007.10.1	610 (10.9)	570 (11.8)	530 (12.8)	490 (14.0)	-	-	-	-	-
	2006.10.1	550 (5.8)	510 (6.3)	470 (6.9)	430 (7.5)	-	-	-	-	-
	2004.7.1	520 (53.0)	480 (60.0)	440 (69.3)	400 (81.9)	-	-	-	-	-
내몽고 內蒙古	2008.1.1	680 (21.5)	620 (19.3)	560 (21.8)	500 (25.0)	-	-	-	-	-
	2006.10.1	560 (33.4)	520 (30.0)	460 (21.1)	400 (-)	-	-	-	-	-
	2004.7.1	420 (27.3)	400 (29.1)	380 (31.1)	-	-	-	-	-	-

성 시 자치구	시행 시기	최저임금 기준 및 전망(단위 : 위안/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6급지	7급지	8급지	9급지
요녕 遼寧	2007.12.20	700 (11.9)	580 (20.9)	500 (19.1)	-	-	-	-	-	-
	2006.10.1	590 (31.2)	480 (20.0)	420 (20.0)	-	-	-	-	-	-
	2004.11.9	450 (40.7)	400 (42.9)	350 (45.9)	-	-	-	-	-	-
길림 吉林	2007.7.1	650 (27.5)	600 (30.5)	550 (34.2)	-	-	-	-	-	-
	2006.5.1	510 (41.7)	460 (39.4)	410 (36.7)	-	-	-	-	-	-
	2003.9.1	360 (16.2)	330 (20.0)	300 (25.0)	-	-	-	-	-	-
흑룡강 黑龍江	2008.1.1	680 (9.7)	650 (10.2)	525 (10.6)	500 (11.2)	460 (9.6)	440 (10.0)	420 (10.6)	-	-
	2006.5.1	620 (59.0)	590 (63.9)	475 (46.2)	450 (47.6)	420 (50.0)	400 (60.0)	380 (61.7)	-	-
	2004.2.3	390 (20.0)	360 (20.4)	325 (13.7)	305 (17.3)	280 (19.7)	250 (13.2)	235 (-)	-	-
상해 上海	2008.4.1	960 (14.3)	-	-	-	-	-	-	-	-
	2007.9.1	840 (12.0)	-	-	-	-	-	-	-	-
	2006.9.1	750 (8.7)	-	-	-	-	-	-	-	-
강소 江蘇	2007.10.1	850 (13.4)	700 (12.9)	590 (13.5)	-	-	-	-	-	-
	2006.10.1	750 (8.7)	620 (12.8)	520 (8.4)	-	-	-	-	-	-
	2005.11.1	690 (11.3)	550 (10.0)	480 (9.1)	400 (11.2)	-	-	-	-	-
절강 浙江	2007.9.1	850 (13.4)	750 (12.0)	700 (12.9)	620 (14.9)	-	-	-	-	-
	2006.9.1	750 (12.0)	670 (9.9)	620 (10.8)	540 (10.2)	-	-	-	-	-
	2005.12.1	670 (8.1)	610 (9.0)	560 (9.8)	490 (11.4)	-	-	-	-	-

성 시 자치구	시행 시기	최저임금 기준 및 전망(단위 : 위안/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6급지	7급지	8급지	9급지
안휘 安徽	2007.10.1	560 (7.7)	540 (8.0)	500 (8.7)	460 (7.0)	420 (7.7)	390 (8.4)	-	-	-
	2006.10.1	520 (26.9)	500 (28.2)	460 (24.4)	430 (19.5)	390 (14.7)	360 (9.1)	-	-	-
	2004.10.1	410 (10.9)	390 (11.5)	370 (8.9)	360 (12.5)	340 (17.3)	330 (22.3)	320 (-)	310 (-)	290 (-)
복건 福建	2007.8.1	750 (15.4)	700 (16.7)	650 (14.1)	570 (3.7)	480 (-)	-	-	-	-
	2006.8.1	650 (8.4)	600 (9.1)	570 (18.8)	550 (17.1)	480 (11.7)	400 (-)	-	-	-
	2005.11.0	600 (25.0)	550 (37.5)	480 (11.7)	470 (30.6)	430 (22.9)	400 (33.4)	350 (25.0)	320 (-)	-
강서 江西	2007.12.31	580 (13.8)	520 (8.4)	480 (6.7)	450 (7.2)	420 (7.7)	-	-	-	-
	2006.12.7	510 (41.7)	480 (45.5)	450 (50.0)	420 (55.6)	390 (-)	-	-	-	-
	2004.9.1	360 (44.0)	330 (43.5)	300 (42.9)	270 (42.1)	-	-	-	-	-
산둥 山東	2008.1.1	760 (24.6)	620 (14.9)	500 (4.2)	-	-	-	-	-	-
	2006.10.1	610 (15.1)	540 (14.9)	480 (14.3)	430 (13.2)	390 (11.5)	-	-	-	-
	2005.1.0	530 (29.6)	470 (23.7)	420 (23.6)	380 (22.6)	350 (20.7)	-	-	-	-
하남 河南	2007.10.1	650 (35.5)	550 (37.5)	450 (40.7)	-	-	-	-	-	-
	2005.10.1	480 (26.4)	400 (33.4)	320 (33.4)	-	-	-	-	-	-
	2003.10.1	380 (31.1)	300 (15.4)	240 (-)	-	-	-	-	-	-
호북 湖北	2007.3.1	580 (26.1)	500 (25.0)	460 (27.8)	420 (31.3)	380 (35.8)	-	-	-	-
	2005.3.1	460 (15.0)	400 (17.7)	360 (16.2)	320 (14.3)	280 (16.7)	-	-	-	-
	2002.1.1	400 (53.9)	340 (44.7)	310 (47.7)	280 (55.6)	240 (-)	-	-	-	-

성 시 자치구	시행 시기	최저임금 기준 및 전망(단위 : 위안/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6급지	7급지	8급지	9급지
호남 湖南	2007.7.1	635 (5.9)	530 (6.0)	500 (4.2)	480 (6.7)	460 (9.6)	440 (10.0)	-	-	-
	2006.4.1	600 (25.0)	500 (13.7)	480 (14.3)	450 (12.5)	420 (10.6)	400 (14.3)	-	-	-
	2005.6.20	480 (4.4)	440 (4.8)	420 (5.0)	400 (5.3)	380 (5.6)	350 (9.4)	-	-	-
광둥 廣東	2008.4.1	860 (10.3)	770 (11.6)	670 (11.7)	580 (16.0)	530 (17.8)	-	-	-	-
	2006.9.1	780 (14.1)	690 (20.2)	600 (21.5)	500 (12.1)	450 (9.8)	-	-	-	-
	2004.12.1	684 (34.1)	574 (27.6)	494 (23.5)	446 (23.9)	410 (24.3)	377 (25.7)	352 (25.8)	-	-
광서 廣西	2007.11.1	580 (16.0)	500 (15.0)	450 (15.4)	400 (16.0)	345 (-)	-	-	-	-
	2006.9.1	500 (8.7)	435 (8.8)	390 (8.4)	345 (7.9)	-	-	-	-	-
	2004.10.1	460 (-)	400 (-)	360 (-)	320 (-)	-	-	-	-	-
해남 海南	2007.12.1	630 (8.7)	530 (10.5)	480 (11.7)	-	-	-	-	-	-
	2006.7.1	580 (16.0)	480 (20.0)	430 (22.9)	-	-	-	-	-	-
	2004.7.1	500 (11.2)	400 (14.3)	350 (16.7)	-	-	-	-	-	-
중경 重慶	2008.1.1	680 (17.3)	560 (16.7)	520 (18.2)	-	-	-	-	-	-
	2006.9.1	580 (45.0)	480 (26.4)	440 (25.8)	-	-	-	-	-	-
	2004.4.30	400 (25.0)	380 (26.7)	350 (25.0)	330 (27.0)	-	-	-	-	-
사천 四川	2007.12.26	650 (12.1)	550 (7.9)	450 (-)	-	-	-	-	-	-
	2006.9.11	580 (28.9)	510 (27.5)	450 (32.4)	400 (42.9)	-	-	-	-	-
	2004.9.1	450 (32.4)	400 (29.1)	340 (26.0)	280 (21.8)	-	-	-	-	-

성 시 자치구	시행 시기	최저임금 기준 및 전망(단위 : 위안/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6급지	7급지	8급지	9급지
귀주 貴州	2007.11.1	650 (18.2)	600 (20.0)	550 (22.3)	-	-	-	-	-	-
	2006.10.1	550 (37.5)	500 (38.9)	450 (40.7)	-	-	-	-	-	-
	2004.10.1	400 (14.3)	360 (12.5)	320 (10.4)	-	-	-	-	-	-
운남 雲南	2008.1.1	680 (26.0)	610 (27.1)	520 (23.8)	-	-	-	-	-	-
	2006.7.1	540 (14.9)	480 (18.6)	420 (20.0)	-	-	-	-	-	-
	2004.10.1	470 (30.6)	405 (30.7)	350 (29.7)	-	-	-	-	-	-
서장 西藏	2008.1.1	730 (47.5)	680 (44.7)	630 (41.6)	-	-	-	-	-	-
	2004.11.1	495 (-)	470 (-)	445 (-)	-	-	-	-	-	-
섬서 陝西	2008.1.1	600 (11.1)	560 (12.0)	520 (13.0)	480 (14.2)	-	-	-	-	-
	2006.7.1	540 (10.2)	500 (8.6)	460 (6.9)	420 (5.0)	-	-	-	-	-
	2005.7.1	490 (50.7)	460 (55.9)	430 (56.3)	400 (63.2)	-	-	-	-	-
감숙 甘肅	2006.8.25	430 (26.4)	400 (25.0)	360 (20.0)	320	-	-	-	-	-
	2004.1.1	340 (21.4)	320 (23.0)	300 (25.0)	-	-	-	-	-	-
	2000.3.1	280 (55.5)	260 (62.5)	240 (71.4)	-	-	-	-	-	-
청해 青海	2006.7.1	460 (24.3)	450 (32.3)	440 (33.3)	-	-	-	-	-	-
	2004.10.1	370 (42.3)	340 (47.8)	330 (50.0)	-	-	-	-	-	-
	2003	260 (36.8)	230 (27.7)	220 (29.4)	-	-	-	-	-	-

성 시 자치구	시행 시기	최저임금 기준 및 전망(단위 : 위안/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6급지	7급지	8급지	9급지
영하 寧夏	2007.10.1	560 (24.4)	530 (26.1)	490 (28.9)	-	-	-	-	-	-
	2006.3.1	450 (18.4)	420 (20.0)	380 (18.7)	-	-	-	-	-	-
	2004.2.1	380 (8.5)	350 (9.3)	320 (10.3)	-	-	-	-	-	-
신강 新疆	2008.1.1	800 (19.4)	670 (8.0)	610 (5.1)	580 (5.4)	550 (5.7)	520 (4.0)	-	-	-
	2006.5.1	670 (39.5)	620 (40.9)	580 (52.6)	550 (48.6)	520 (44.4)	500 (42.8)	480 (45.4)	460 (43.7)	440 (46.6)
	2004.5.1	480 (4.3)	440 (4.7)	380 (8.5)	370 (5.7)	360 (9.0)	350 (9.3)	330 (10.0)	320 (14.2)	300 (15.3)

[부록 2]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

시행일 : 2004년 3월 1일

제1조 노동자가 취득한 노동보수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민영 비기업단위(民辦非企業單位), 노동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 이하 회사<用人單位>라 함) 및 이와 근로관계를 형성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이와 근로계약 관계를 가진 노동자에게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의 최저임금표준은 노동자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약정된 근로시간에 제공한 정상적인 노동에 대해 회사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최저 노동보수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정상적인 노동이라 함은 노동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또는 노동계약에 약정된 근로시간에 종사하는 노동이다.

노동자가 법에 의해 보장받는 유급연차휴가, 친족방문휴가, 혼.상례 휴가, 출산육아휴가, 피임수출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기간 및 법정 근로시간에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한 시간은 정상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기관은 본 행정지역 소재 회사의 본 규정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진행한다.

각급 공회(노동조합)조직은 본 규정의 집행상황을 감독하며 회사가 노동자 임금과 관련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지역 노동보장행정기관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최저임금표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의 형식을 취한다. 월 최저임금표준은 전일제 취업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비전일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6조 월 최저임금표준의 확정과 조정은 해당 지역 취업자와 부양인구의 최저생활비, 도시주민 소비가격지수, 노동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비용과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주택기금), 노동자 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의 요소를 참고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확정과 조정은 공포된 월 최저임금표준의 기초 위에서 회사가 납부해야 할 기본양로보험비용과 기본의료보험비용 요소를 고려하고 노동 안정성, 노동 조건, 노동 강도, 복지 측면에서 전일제 취업노동자와의 차이를 적당히 고려해야 한다.

월 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별첨 문서를 참조한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행정지역들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최저임금표준의 확정과 조정방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기관이 동급 공회, 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와 함께 연구, 제정하고 이를 노동보장부에 제출한다.

조정방안은 최저임금표준의 확정과 조정 근거, 적용범위, 제정표준과 설명을 포함한다. 노동보장부는 제정방안을 접수한 후 전국총공회와 중국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노동보장부는 제정방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정방안 접수 후 14일 내에 수정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기관은 본 지역의 최저임금표준 방안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해야 하며 비준 후 7일 이내 에 이를 해당 지역의 정부공보와 최소한 1종의 지역 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정보장기관은 공표 후 10일 이내에 최저임금표준을 노동보장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최저임금표준을 공표, 시행한 후 본 규정 제 6조에 규정한 관련 요소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적시 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표준은 최소한 2년에 1회 조정한다.

제11조 회사는 최저임금표준 발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사내 전체 노동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12조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였을 경우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은 아래 항목을 제외한 후 지역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1) 잔업비;
- (2) 야간교대조 수당, 고온 및 저온, 갭내 작업, 유독유해 등 특수작업환경과 조건에 따른 수당;
- (3) 법률, 법규와 국가가 규정한 노동자 복리대우 등.

성과급(計件工資) 또는 도급(提成工資) 등의 임금 형식을 실행하는 회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액 기초 위에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지역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동자 본인의 사유로 인해 법정 근무시간 또는 노동계약에 약정한 노동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회사가 본 규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노동보장행정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하고; 본 규정 제 12조를 위반한 경우 노동보장행정기관은 기한 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과 함께 체불임금의 100%~500%의 배상금 지불을 명한다.

제14조 노동자와 회사 간에 최저임금표준의 집행과 관련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쟁의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1993년 11월 24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기업최저임금규정」을 폐지한다.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현지 반응조사	2008.3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작성자

중국팀 박한진 차장

Global Business Report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년 3월 31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